

의안번호	제875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

발의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의자 : 오영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
조성태

1. 제안이유

-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야간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·발굴하여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활성화계획의 효율적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6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- 사무의 위탁 근거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야간관광”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명소, 문화·예술행사, 축제, 유적지,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.
2. “야간관광사업”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한 운송, 숙박, 음식, 오락, 휴양, 체험,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·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)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
2.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계획
3.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
4.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
5.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
6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
7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

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, 수요 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추진)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
2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
3.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·예술·체험 프로그램 운영
4. 야간관광 홍보·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
5.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
6.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기획·운영
7. 야간관광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
8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의 수립·변경
2. 야간관광 사업 추진 및 평가
3. 야간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
4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야간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2. 위촉직 위원: 관광산업, 야간관광, 문화·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

④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관광진흥법[법률 제20357호, 2024. 2. 27.]

-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 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 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 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 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야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·발굴하여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4조(계획의 수립)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5조(실태조사)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6조(사업의 추진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~2029년까지 5년으로 하고,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
-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수행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6호의 사업을 국비지원규모*를 고려하여 개소당 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*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사업(문화체육관광부 공모)

나. 추계 결과 : 4,23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, 시군비 35%)

-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 630백만원 시작으로 향후 5년간 422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예 산	630	600	600	1,200	1,200	4,230

- 산출내역 : 개소당 600백만원

- 4차년도(2028년)부터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산정함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
지원 개소수	1	1	1	2	2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50%, 도비 15%, 시군비 35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	
야간관광활성화 지원	620,000	600,000	600,000	1,200,000	1,200,000	4,220,000	
재원 조달	630,000	600,000	600,000	1,200,000	1,200,000	4,230,000	
의존 재원	소 계	300,000	300,000	300,000	600,000	600,000	2,100,000
	보조금	300,000	300,000	300,000	600,000	600,000	2,100,000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30,000	300,000	300,000	600,000	600,000	2,130,000
	지방세	120,000	90,000	90,000	180,000	180,000	66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군비	210,000	210,000	210,000	420,000	420,000	1,470,000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